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029
----------	------

2024년 9월 2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8월 12일, 김기덕 의원
나. 회부일자: 2024년 8월 14일
다. 상정일자: 제32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4년 9월 2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기덕 의원)

- 가. 제안이유
- 최근 혼인률 감소 및 독신가구 등 증가에 따라 남녀노소 불문하고 1인 가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1회용품 사용량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 특히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조례 규정 외에도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도 지원 조항을 확대하고,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환경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나. 주요골자

- 추진계획 수립 시 민간 확산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우수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시장이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제2항 및 제3항).
- 민간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에 있어 연구 조사 사업 신설 및 다회용품 활용 시설의 설치 및 지원에 있어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한하도록 규정하고,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조항 신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제5항).
-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및 기업의 지정 등에 대해 별도 조항을 분리하고 우수업소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자의적 집행 방지하고자 별도 조항 신설(안 제9조).
- 불완전한 자구 등 수정 및 불필요한 내용 중복 방지하고자 삭제, 기타 조문 제목 수정 등(안 제4조, 제6조,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 등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회용품 줄이기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간위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1회용품 관련 시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임.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

조 항	내 용
안 제4조	· 추진계획에 민간 확산 및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 포함 등
안 제7조2	· 민간위탁 규정 신설(다회용품 활용시설)
안 제9조	·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 지정 관련 규정 정비 등

나. 검토의견

- 안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는 추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민간 확산 및 시민참여 활성화 대책과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안 제7조제1항제4호는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에서 이를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임.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시민참여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관련 연구·조사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역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안 제4조와 제7조제1항제4호에 대해 이견 없음.

- 안 제6조의 제목 변경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

용품 사용 제한 등'으로 수정하려는 것이나,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란 시 본청부터 출자·출연기관까지 시 관련 모든 기관을 아우르는 용어이므로, 조 제목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또한, 안 제7조는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장려를 위한 시책 사업 추진과 민간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권고한 것이므로, 이의 제목 역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으로 수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안 제9조는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에 관해 현행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우수업소에 대한 지원 사항 중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은 조례 체계상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요구됨.
- 안 제7조제5항은 시장의 1회용품 시책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자체에 대한 이견은 없음.

다만, 현재 서울시의 1회용품 관련 시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민간 위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시장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바, 민간 위탁은 사업의 확대 여부를 주시하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 의견>

현행	개정안	수정 의견
<p>제6조(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⑥ (생 략)</p>	<p>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⑥ (현행과 같음)</p>	<p>제6조(공공기관의 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⑥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 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 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제7조(민간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 ① ----- ----- ----- -----.</p>	<p>제7조(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 ----- -----.</p>
<p>1.~3. (생 략) <신 설></p>	<p>1.~3. (현행과 같음) 4. 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p>	<p>1.~4.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p>
<p>4.5. (생 략)</p>	<p>5.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p>	<p>5.6. (개정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 법제 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p>	<p>② ----- ----- --.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p>	<p>② ----- -----,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정한다.</p>
<p>③·④ (생 략) <신 설></p>	<p>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④ (개정안과 같음) <삭 제></p>
<p><신 설></p>	<p>제9조(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 ----- 1. (생 략)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시책 우선 지원</p>	<p>제9조(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1. (개정안과 같음) <삭 제></p>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수정안 요지

- 서울시 1회용품 관련 시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민간위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시장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바, 민간위탁 규정 등을 삭제함.

8.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2029
----------	------------

제안년월일: 2024년 9월 2일

제안자: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서울시 1회용품 관련 시책의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민간위탁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자칫 시장의 책무를 민간에 떠넘긴다는 비판에 직면할 우려가 있는바, 민간위탁 규정 등을 삭제하고, 일부 조 제목 등을 문맥에 맞게 수정함.

2. 주요 골자

- 조 제목을 문맥에 맞게 수정함(안 제6조, 제7조).
-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함(안 제7조제5항).

3. 참고사항: 생략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조의 제목“(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으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민간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만”을 “다만,”으로, “서비스공급”을 “서비스 공급”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안 제9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⑥ (생략)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⑥ (개정안과 같음)
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략) <신설>	제7조(민간 확산 등을 위한 지원사업)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	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 ----- ----- ----- 1. ~ 3. (개정안과 같음) 4. (개정안과 같음)
4. ~ 5. (생략)	5. ~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5.6. (개정안과 같음)
② 시장은 민간기관·단체, 법제 1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 -----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한다.	② ----- -----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으로 한정한다.
③ ~ ④ (생략) <신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 ④ (개정안과 같음) <삭제>
<신설>	제9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 1. (생략) 2.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 우선 지원 3. ~ 5. (생략)	제9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 ① (개정안과 같음) ② ----- 1. (개정안과 같음) <삭제> 3. ~ 5. (개정안과 같음)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제7조에 따른 1회용품”을 “1회용품”으로, “교육”을 “교육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민간 확산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5. 제9조에 따른 우수업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 제목“(1회용품 사용 제한 등)”을“(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지원사업)”을“(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조사 사업

제7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5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은 민간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

으로 한정한다.

제7조의2를 삭제한다.

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자발적으로 1회 용품을 사용하지 않거나 줄이는 데 기여한 업소 또는 기업을 1회용품 줄이 기 우수업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소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마크 수여
2. 해당 업소 및 기업에 대한 홍보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업소·기업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하고 객 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우수업소·기업 선정기준과 선정방법· 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사항과 지원기준, 제3항에 따른 지정해지 사유와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표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공표와 홍보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종전의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생략)</p> <p>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2. (생략)</p> <p>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p> <p><신설></p> <p><신설></p> <p>4. ~ 6. (생략)</p> <p><신설></p> <p>③ (생략)</p> <p>제6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⑥ (생략)</p> <p>제7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1회용품 ----- ----- 교육에 관한 사항</p> <p>4. 민간 확산 및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p> <p>5. 제9조에 따른 우수업소·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p> <p>6. ~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p> <p>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p> <p>④ (현행 제3항과 같음)</p> <p>제6조(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p> <p>제7조(1회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 ----- -----.</p> <p>1. ~ 3. (현행과 같음)</p>

1. 인증마크 수여
2. 해당 업소 및 기업에 대한 홍보
3.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
른 표창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우수업소·기업 선정기준 및 지
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
우

④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
소·기업 선정 및 지원제도의 공정
하고 객관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
항에 따른 우수업소·기업 선정기
준과 선정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지원사항과 지원기준, 제3항에 따
른 지정해지 사유와 기준 등 구체
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표 및 홍보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공표와 홍보 등의 구
체적인 방법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표창) ①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

제10조(표창)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

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자원순환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선정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업소 홍보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생략)

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